

서울특별시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370
----------	------

발의연월일 : 2016년 8월 16일
발 의 자 : 이정훈 의원(1명)
찬 성 자 : 김생환, 김인호, 박운기,
조상호, 김혜련, 장우윤,
문형주, 우형찬, 김태수,
유 용, 김광수(노원),
장인홍, 박호근 의원(13명)

1. 제안이유

-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 제11조에서 위임한 유치원의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적용범위 및 선발인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까지)
- 다. 유아모집·선발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유아모집·선발요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마. 유아모집·선발 방법 및 교육감이 모집·선발할 수 있는 경우 등에 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유아교육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모집”이란 제5조의 유아모집·선발계획과 제6조의 유아모집·선발요강에 따라 입학원서를 신청·접수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 “선발”이란 제2조에 따라 모집된 유아 중 추첨 및 학부모 등록 등을 통해 해당 유치원에 입학하거나 입학 대기할 유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유치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선발인원) 유아 선발인원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이 인가한 정원 내의 인원으로 한다.

제5조(모집·선발계획) ① 교육감은 매년 유아모집·선발계획(이하“선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아의 모집·선발 대상 및 인원
2.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3. 유아의 모집·선발을 위한 구비서류
4. 유아의 모집·선발 우선순위 모집 대상 및 범위
5. 그 밖에 유아모집·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선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전에 유치원의 장(이하“원장”이라 한다.) 및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모집·선발요강) 원장은 선발계획에 따라 해당 유치원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아모집·선발요강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모집·선발방법) ① 원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아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모집·선발하여야 하고, 유아의 모집·선발은 공개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유아의 모집·선발을 실시할 수 있다.

1. 유아모집·선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는 경우
2. 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교육감이 실시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동 조례안은 유치원의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이정훈 의원(02)(3783 - 1886)